

## 소규모 합병 공고

휴젤(주)는 휴젤파마(주) 및 휴젤메디텍(주)과 2017년 11월 22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1. 합병방법 : 휴젤(주)가 휴젤파마(주) 및 휴젤메디텍(주)를 흡수합병함
2. 합병비율 : 휴젤(주) : 휴젤파마(주) = 1.00 : 0.00  
휴젤(주) : 휴젤메디텍(주) = 1.00 : 0.00
3. 소멸회사의 현황
  - 가. 휴젤파마(주) (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, 1601 호)
  - 나. 휴젤메디텍(주) (본점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, 15 층 1503 호)
4. 합병기일 : 2018년 1월 31일
5. 휴젤(주)와 휴젤파마(주) 및 휴젤메디텍(주)의 합병은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  - 가. 행사절차 : 2017년 12월 4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.
  - 나. 기 간 : 2017년 12월 6일 ~ 2017년 12월 19일
  - 다. 행사방법 및 장소
    - (1) 명부주주 : 2017년 12월 19일까지 휴젤(주) IR 팀에 제출  
(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17층 IR 팀, Tel. 02-6966-1600)
    - (2) 실질주주 : 2017년 12월 15일까지 (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.
  - 라. 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 527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함.
  - 마. 상법 제 527 조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

2017년 12월 05일

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-20

휴젤 주식회사

대표집행임원 송성근, 심주엽

[별첨] 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

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

휴젤(주) 대표집행임원 귀하

본인은 휴젤(주)와 휴젤파마(주) 및 휴젤메디텍(주)의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

주주번호		주주명	
소유주식의 종류		소유주식수	

2017 년 12 월 일

성명 : 주민등록번호 :

주소 :